

구 분		
열람·서명자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성명 전다운 (서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노승용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성명 김순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202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8.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 202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8. 29.(화) 14:00 ~ 14:30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전다운, 이현수, 노승용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 안 건 : 이의신청 2건
 - (2023-62)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협조요청
 - (2023-63) : 설계자 선정관련 정보공개 청구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49) : 기각 - 비공개
 - (2023-50) : 기각 - 비공개

【 의안번호 2023-62 이의신청 】

안건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협조요청(주거정비과-10184)

<000 위원>

먼저 첫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2호 주거정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서울시 주거정비과 000입니다.

<000 위원>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정보공개청구 심의대상 문서를 조금 확정하고 싶은데요. 민원 인께서 주신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면 주거정비과-10184번 공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내주신 심의대상 비공개자료를 보면 5개 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붙임자료여서 주신 것인지, 이게 다 10184 공문의 일부인 건가요?

<000 주무관>

그거는 양천구청에서 저희한테 온 문서에 대한 붙임문서고요.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만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제가 이 신청서를 봐도 심의대상 문건이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이 통합기획 주택재 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협조요청 이 1장짜리 문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공개하셔서 이 노란색 부분만 비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비공개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신월7동 1구역이라는 구역 명칭이나 동 이런 부분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거든요.

<000 주무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지 선정 때 신월7동 1구역이라는 구역명은 공개가 된 상태인 데요. 지금 고시 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구역 명칭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신월7동 1구역이라는 곳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저희가 후보지 선정할 때 부르기로 약간 가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 명칭이고, 중간에 나중에 도계위를 간다든지 했을 때 명칭도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쯤 확정되는지.

<000 주무관>

지금은 신통 기획안만 확정이 된 상태고요. 법적 입안절차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 신통 기획안이 통보가 돼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등 관련 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계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고시로 확정이 됩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호인가요, 5호 사유로 비공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정시점에 공개를 하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시점을 언제로 특정해야 될지가 궁금해서 여쭙봤고 요. 그러면 고시시점이 확정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000 주무관>

확정은 고시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시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가 된다고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공람회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000 주무관>

네. 지금 법적 입안절차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000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청구인께서 특정하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 -10184를 보면 문서제목만으로는, 문서제목 공개되어 있고 문서번호하고 주무부서 이렇게 이미 이거는 문서제목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5번에 주심위원님께서 특정해 주신 그 문서를 보면 수신인이 드러나 있잖아요. 수신인이 양천구청장 이라고.

<000 주무관>

네.

<000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서제목이나 문서번호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어느 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통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돼도 무방하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장은 안 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의 신통 기획이라는 게 이것만으로도, 이걸 종합을 하면 양천구청 관련 신통 기획이고 양천구 관내에 어떤 재개발사업 관련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청구인이 알게 되는데 그래도 무방하시다는 뜻인 거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그거는 무방합니다.

<000 위원>

잠깐 나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000 위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한글문서 하나로 일단 심의대상을 확정하고요.

여기서 실무부서에서 주신 의견대로 노란색 부분 5호 사유로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기각 의견 주셨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000위원>

주심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000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63 이의신청 】

안건명 : 설계자 선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000 위원>

두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3-63호**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 000 주무관입니다.

<000 위원>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일단은 어떤 자료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인지부터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 주무관>

우선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된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특정한 문서를 지정하지 않고요. 압구정 선정 관련된 서울시에서 조합에 발송한 입찰 관련, 용적률 관련 공문 일체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합에 공문 발송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자 선정 유의사항이라든지 형사고발 건에 대한 고발 알림 형식으로 이런 몇 건의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고요.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민원 형식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민원안내 형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서는 존재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공개를 했던 사항이고요.

<000 위원>

현재 이게 재판 중인 상황인가요?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000 주무관>

형사고발된 사항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현재 비공개되어 있는 이 문서들이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 이게 공개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000 주무관>

일단은 이 문서들이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그런 조사과정이나 진행과정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부분공개 내지는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000 위원>

어떤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000 주무관>

설계자 선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조사 내지는 진행과정에서 논점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나 그다음에 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사항들이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분공개 처리했던 겁니다.

<000 위원>

예를 들면 고발장 이런 부분은 다 공개를 하신 건가요?

<000 주무관>

고발장은 고발한 근거만 알려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입찰 관련 공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공개가 되면 예를 들어 문제가 될까요?

<000 주무관>

이게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라든지 조사 중인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조합에서 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공개됐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조합의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본 겁니다.

<000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혹시 그러면 행정처분은 별도로 안 하신 건가요? 고발 말고요.

<000 주무관>

행정처분은 아직 내리지 않았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후속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은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 요구를 했으니 이 시정되는 거를 보고 조치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000 주무관>

네. 이게 아직 설계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조합이라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조합의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000 위원>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일단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무관님은 잠깐 나가 계셨다가 들어와 주십시오.

주심위원이신 000 위원님께 의견을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고소·고발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비공개, 즉 기각 의견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기각 의견이라 말씀해 주신 주심위원님 의견에 저도 찬성은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릴 것은 비공개 사유 9조 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관청이나 또 주심위원님은 의사결정 과정, 구체적으로는 또 입찰계약 과정 중이겠지요. 그래서 5호 사유로 비공개 의견 주셨는데요.

서울시가 고발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고발인이 되어서 형사절차가 진행 된다고 하면 4호 사유로 고발장 같은 경우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압구정3구역이라고 하는 재건축조합이니까 도시정비법상의 조합 인데요. 이 조합이 설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이 공법인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던데 어쨌거나 이 조합이 설계용역을 특정 회사와 이렇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 계약 관련이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문 비공개하신 그 내용 중에는 조합을 상대로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도 있더라고요.

압구정3구역 조합한테 설계 용역 관련해서 계약 체결할 때 서울시가 마련한 법령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여러 지침을 준수해서 계약 맺어라라는 그런 취지니까 이거는 조합 관점에서 보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그런 또 정보로서의 성질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9조 1항의 어느 특정 호보다 정보의 성질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 법적근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면 어떤가,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저도 비공개 사유를 추가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지금 4호는 해당이 될 것 같고, 6호나 7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주택재건축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기는 있지만 이걸 또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경영상·영업상 비밀

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000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000 위원>

저도 사실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뭔가 비밀이나 이런 쪽에는 아닌 듯해서 그랬는데요. 저도 추가하는 거에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 의견은 동의하는데, 저는 비공개 사유를 4호, 5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7호는 저는 조금 잘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법인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영업비밀인지, 이런 선정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게 보호해야 될 정당한 이익인가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 5호로 비공개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거는 처음에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하실 때 특정 문서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뭐 서울시의 의견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나열하신 것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혹시 각하 사유가 되어야 될지, 비공개 부존재 사유가 되어야 될지 혹시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지금 그거를 논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000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 지금 000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청구 인계서 요청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보공개청구서상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셨잖아요. 거기 3번 이후로 보시면 이거는 정보공개청구의 실질이 있다라기

보다는 일종의 질의민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런 사안에서는 이걸 아예 정보공개청구로서의 성질이 미약하니까 이걸 민원으로 보아서 민원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000 위원>

이거를 다 지금 각하를 여기 또 별도로 처리하자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 세분화하시지 말고 비공개 사유만 될 수 있는 것을 덧붙여서 일괄 그냥 처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그러면 비공개 사유는 제가 보기에 지금 아까 000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4호, 5호.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수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4호, 5호. 그리고 영업상·영업상 비밀 이것도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7호 이렇게 해서 4호, 5호, 7호 여기를 비공개 사유로 해서 기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만 비공개 사유는 현재 4호로만 검토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5호와 7호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는 수사와 관련된 4호 외에 내부 의사검토와 관련된 5호, 그리고 영업상 비밀도 조합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보아서 7호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3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